

건설공사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3. 4.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내용	3
3. 과업 수행지침	4
4. 예정공정표	11
[붙임] 보안서약서 서식	12
II. 제안요청서	13
1. 용역개요	13
2.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5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8
[붙임] 제안관련 서식	22

I.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대내외 환경

□ 과업의 배경

- 공공건설사업의 시행 당시 추정된 수요·공사비·공사기간·기대 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에 대하여 준공 이후 재평가
 -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00.3)
- 그러나, 제도의 큰 축인 사후평가 이행, DB관리, 평가 및 활용 체계 등 제도 전반이 미흡하여 활용성이 저조한 상황
 - 우선, 사후평가 이행율은 발주청의 관심 부족, 예산확보 소홀 등으로 약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행확보 수단·방법도 미비
 - 또한, 체계적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되는 평가 DB의 입력·연계·관리 부족 등으로 객관적이고 규질한 평가도 곤란
 - 평가 대상도 공사를 설계·수행한 설계사·시공사 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평가항목은 주로 정성적 항목이 많고 지표도 미흡
 - 특히, 차후 공사에 활용을 위한 평가결과는 주로 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되고 있어 활용성이 매우 미흡

- 이에, 사후평가 이행, DB관리, 평가대상 확대 및 환류체계 개선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 추진

3.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

나. 공간적 범위

- 사례조사·분석은 국내·외 자료를 포함

다.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세부 과업내용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수행 중 발주처와 추가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포함

4. 소요예산 : 89,403,000원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② 과업의 내용

1. 건설사업 단계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설계-시공-준공 등 사업단계별 Data 정량화 · 표준화 · 통계화 및 민간 필요자료 개방 방안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등 유관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 활용방안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안전종합정보망, 건설Eng, 시설물 관리시스템 등

2. 사후평가 대상 확대 · 항목 정비 및 기법 등 개선방안

- 평가대상을 설계사 · 시공사 등 건설사업 주체로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업지수 등을 활용한 평가항목* · 기법 개발 및 제도화 방안

* 안전, 품질 및 시공관리 적정성 등

- 체계적이고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정량화 · 간소화 등 개선 · 정비 방안

- 특히, 활용성이 낮은 평가 항목 · 지표는 전면 재정비

- 공사 금액 · 공종 및 시공사 등으로 구분한 종합평가방안 마련

3. Data 관리(정량화 · 표준화 · 통계화), 민간개방 및 유관 정보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 발주청 평가 이행률 제고 및 평가결과 검증 · 보완 방안

- 객관적 · 구체적 평가에 한계가 있는 발주청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 보완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용 제고 방안

- 현행 약 50%수준에 그치고 있는 발주청 사후평가 이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인센티브 방안

5. 사후평가 환류·활용 강화방안

- 사후평가 결과가 차후 유사공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환류·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후평가 자료 DB화 및 관련 ISP와 연계하여 마련

6. 과업내용별 외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검증

③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1) 본 지침에서 발주처를 “갑”,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칭한다.
- 2) 지침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과업수행기준

-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중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2) “갑”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3) “을”은 과업수행 중 연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갑”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 1)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등 의미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 1)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 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가)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과업수행자가 “갑”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 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용을 조정 할 수 있다.
- 3) 본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1)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본 과업의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

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 시 "을"은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용역기관의 의무

- 1) "을"은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2) "을"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 특허권의 사용

- 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성과품의 소유

-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과 이를 원 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 1) “을”은 과업진행에 대한 “갑”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을”은 과업내용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2. 보고

가. “을”은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 세부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2)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3) 과업참여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4) 예정공정표
-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의견을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성과보고 및 협의

- 가.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을”은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을”은 최종보고서(안)을 준공일 14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필요한 경우 준공 후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 마. “을”은 착수 후 “갑”이 지정한 시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4.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가. 용역보고서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A4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다. 용역보고서 30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하여 용역회사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만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과업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 '17.7.13) 중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4] 예정공정표

내용	월			
	1~2개월	3~4개월	5~6개월	7~8개월
가. 세부연구계획 수립	■			
나. 건설사업 단계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	■		
다. 사후평가 대상 확대·항목 정비 및 기법 등 개선방안		■	■	
라. Data 관리, 민간개방 및 유관 시스템간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방안		■	■	■
마. 발주청 평가 이행을 제고 및 평가결과 검증·보완 방안			■	■
바. 사후평가 환류·활용 강화방안				■
사. 최종 보고서 작성				■
보고 및 자문회의	(상시)			

* 용역 추진여건에 따라 수행일정 변경 가능

첨부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기일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	20부
중간보고서	과업종료 3개월 이전	20부
최종보고서	과업종료 이전	20부

※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와 CD로 제출함

II. 제안요청서

1 용역개요

1. 용역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설계금액 : 89,4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시행 당시 추정된 수요·공사비·공사기간·기대 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에 대하여 준공 이후 재평가
 -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00.3)
- 그러나, 제도의 큰 축인 사후평가 이행, DB관리, 평가 및 활용 체계 등 제도 전반이 미흡하여 활용성이 저조한 상황

- 우선, 사후평가 이행율은 발주청의 관심 부족, 예산확보 소홀 등으로 약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행확보 수단·방법도 미비
 - 또한, 체계적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되는 평가 DB의 입력·연계·관리 부족 등으로 객관적이고 규질한 평가도 곤란
 - 평가 대상도 공사를 설계·수행한 설계사·시공사 등에 대한 평가는 미 실시, 평가항목은 주로 정성적 항목이 많고 지표도 미흡
 - 특히, 차후 공사에 활용을 위한 평가결과는 주로 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되고 있어 활용성이 매우 미흡
- 이에, 사후평가 이행, DB관리, 평가대상 확대 및 환류체계 개선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 추진

6. 과업내용

1) 건설사업 단계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설계-시공-준공 등 사업단계별 Data 정량화·표준화·통계화 및 민간 필요자료 개방 방안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등 유관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활용방안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안전종합정보망, 건설Eng정보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 등

2) 사후평가 대상 확대·항목 정비 및 기법 등 개선방안

- 평가대상을 설계사·시공사 등 건설사업 주체로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업지수 등을 활용한 평가항목*·기법 개발 및 제도화 방안

* 안전, 품질 및 시공관리 적정성 등

- 체계적이고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정량화·간소화 등 개선·정비 방안
- 특히, 활용성이 낮은 평가 항목·지표는 전면 재정비

- 공사 금액 · 공종 및 시공사 등으로 구분한 종합평가방안 마련

3) Data 관리(정량화 · 표준화 · 통계화), 민간개방 및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 발주청 평가 이행률 제고 및 평가결과 검증 · 보완 방안

- 객관적 · 구체적 평가에 한계가 있는 발주청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 보완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용 제고 방안

- 현행 약 50%수준에 그치고 있는 발주청 사후평가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인센티브 방안

5) 사후평가 환류 · 활용 강화방안

- 사후평가 결과가 차후 유사공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환류 ·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사후평가 자료 DB화 및 관련 ISP와 연계하여 마련

6) 과업내용별 외부 전문가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검증

②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등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모든 공동수급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계약방법: 제한경쟁

3.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③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라.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유연형
 - 연락처 : 044-201-3558~3559

4.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식 및 절차

가.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 부에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5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정량평가 (5)	1. 참여업체	- 연구인력 보유수	5	발주 부서 평가 주1)
	1. 사업수행 이해도	-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이해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전략	5 10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75)	2. 분야별 사업수행 계획의 추진전략	- 건설사업 단계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10	평가 위원 평가 주2)
		- Data 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민간개방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방안	15	
	3.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 사후평가 대상 확대, 항목 정비 및 기법 등 개선방안	10	
		- 발주청 평가 이행을 제고 및 평가 결과 검증·보완 방안	10	
		- 사후평가 환류·활용 강화방안	10	
	4. 차별화 전략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기술지원 가능 사항 제시 등	5	

주1) 기술능력 정량평가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여업체	(1) 연구인력 보유수	[5]	- 공고일 기준으로 토목·건축·사업관리·Eng·DB·전산· 전자·경영·통계·회계 등 유관 분야 석사·박사 등 연구인력 및 중·고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수			
			8인 이상	7인	6인	5인 이하
			5	4.5	4	3.5

주2)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세부평가방법

○ 사업수행이해도 (15점)

-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이해도 (5점)
-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전략
소개 (10점)

- 분야별 사업수행계획의 추진 전략 (25점)
 - 건설공사 단계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10점)
 - Data 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민간개방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방안 (15점)
-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30점)
 - 사후평가 대상 확대, 항목정비 및 기법 등 개선방안 (10점)
 - 발주청 평가 이행을 제고 및 평가결과 검증·보완 방안 (10점)
 - 사후평가 환류·활용 강화방안 (10점)
- 차별화 전략 (5점)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기술지원 가능 사항 제시 등 (5점)

< 정성평가 등급구간 및 점수배점 기준 >

구분	S	A	B	C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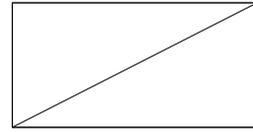
나.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6 서식모음

1. 제안서 표지
2. 제안기관(업체) 일반현황
3.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4. 용역(연구) 수행실적
5.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6. 청렴계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개선 연구

기관(업체)명 : (인)

제안기관(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서식 #3]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4]

용역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 주) 1. 최근 3년간 본 과업 관련 용역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4】**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